

## 농림부

### 닭 뉴캐슬병 방역관리 철저 당부

농림부는 닭 뉴캐슬병 예방을 위해 부화장 및 닭 사육농장에 뉴캐슬병 예방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거점 방역 계획을 수립하는 등 뉴캐슬병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뉴캐슬병 발생 보고건수가 11건(2002년에는 8건)에 달하는 등 뉴캐슬병이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과거의 경우 닭고기 성수기를 맞이하여 밀집사육 등의 사유로 4~6월경에 뉴캐슬병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이 기간 동안 동질병 발생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각 시·도 및 검역원을 비롯해 농협 및 관련단체에 철저한 예방접종 이행으로 뉴캐슬병 예방 홍보를 닭 사육농가에게 적극 지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HACCP 적용도축장 미생물검사 이행기준 도입

농림부는 지난 3월 31일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 하한기준이 신설되고 사후관리업무가 종전의 검역원에서 시·도로 이관된다.

HACCP 적용도축장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증기준(안)에 따르면 미생물검사항목은

대장균수 및 살모넬라균으로 대장균검사는 HACCP 적용 도축장의 영업자가 실시한다.

그러나 살모넬라균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검사빈도는 소 300도체, 돼지 1,000도체, 닭 2만2,000도체마다 각 1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되 1주 도축마리수가 이에 미달하는 작업장의 경우는 최소한 1주에 1건씩은 검사한다.

단 연간 도축마리수가 소 6,000마리, 돼지 2만마리, 또는 소 및 돼지 합계 2만마리 미만, 닭 44만마리 미만인 소규모 도축장은 6~8월에만 매주 1건씩 검사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HACCP 적용업소 지정업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검역원에서 일관되게 담당함으로써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HACCP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당해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에서 담당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본회는 현재 소 300도체, 돼지 1,000도체, 닭 2만2,000도체마다 각 1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는 내용에 대해 소, 돼지의 검사빈도와 비교하여 닭의 검사빈도가 높기 때문에 닭의 검사빈도를 3만수 도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또한 검사주체 및 검사기준과 관련해서 국내 위생 및 환경상태를 고려하여 닭의 대장균수 허용기준치를 1,000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안) 제정**

농림부는 뉴캐슬병으로 인한 육계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뉴캐슬병 방역이 중요하다고 판단,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안)'을 제정,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조류(닭, 오리, 칠면조 및 기타 뉴캐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조류를 포함)와 그 생산물, 발생지 등에서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사료·장비·차량 등에 적용한다.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닭 소유자 등은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부화장에서 1차 실시하며, 육계 및 이의 사육기간에 준하는 닭의 경우 닭 사육시설에 입식 후 2차 실시해야 한다.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은 부화장 또는 양계장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예방접종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해야 하고,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할 수 있다.

과거 뉴캐슬병이 발생한 양계장 또는 뉴캐슬병 예방주사 미실시 의심양계장을 대상으로 계군당 최소 10수이상 검사하고, 축주가 발급한 뉴캐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계군을 우선으로 10수 이상 검사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화장에는 3백만원이하, 10만수 이상에는 2백~3백만원이하, 10만수미만 1백50~2백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캐슬병 발생시 방역요령

뉴캐슬병이 의심되거나 이 병에 걸린 조류를 발견한 자는 또는 이러한 조류를 진단했거나 이러한

조류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한다.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혈청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농장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금지한다. 가금을 도축할 목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당해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닭도축장을 출하 도축장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다만, 지정 도축장은 수출용 조류를 도축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21일 이상 소독 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뉴캐슬병 종식보고를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 등에 해야 한다.

■비발생국 인증 및 유지단계 방역요령

뉴캐슬병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후 3년간 발생이 없는 때 또는 살처분을 실시, 6월이 지난 후에는 비발생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발생 지역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뉴캐슬병 발생지역에서 닭을 구입한 경우에는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한 닭을 양계장에 입식한 날부터 21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자연교배 또는 인공수정은 비발생 지역의 종계나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다. 닭 뉴캐슬병 발생위험 지역의 종계 또는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정액을 생산한 닭에 대해 예방접종 상황, 항체 보유상황 및 해당 양계장의 역학사항을 확인한다.

뉴캐슬병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날부터 6월이상 뉴캐슬병 발생 사실이 없는 때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에 의거, OIE에 뉴캐슬병 비발생국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농림부는 제출해야 한다.

**육계 자조활동자금 설치 관련 협의회  
각 단체인 긍정적 접근방법 모색**

지난 3월 20일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협의회가 한국계육협회, 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각 단체인 합의점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양 단체가 주장하는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시행하더라도 거출금 조성을 계열주체가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납부하는 거출금액의 범위내에서 조성하는 방안과, 계열주체와 수평계약농가에 대하여는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도하는 등 접근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

농림부에서는 현행 소·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에 닭도체 등급판정 내용을 추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닭고기는 소·돼지처럼 통일된 품질규격 기준이 없음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업체와 소비자간에 믿을 수 있는 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닭고기등급판정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개정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하여 4월 1일부터 충북 진천 소재 (주)체리부로를 대상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과정을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축산기술연구소  
닭고기 먹는 날 행사 개최**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로 닭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 가금과(과장 이상진)에서는 백색육(White meat)인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로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양에서 유입된 '화이트데이(White day)'를 우리식 '白日(4월 9일)'과 '구구 day(9월 9일)'로 정하자는 제안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닭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충남 유성소재 가금과내 야외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가금관련 연구원들의 모임인 계연회(鷄研會) 행사와 병행해서 열렸으며, 본회를 포함하여 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닭고기 바비큐 구이와 본회 회원사에서 제공한 가공품을 시식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대한양계협회**  
**전국 닭질병 교육순회 세미나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최근 닭 질병 발생의 증가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닭 질병 방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질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닭 질병 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4월 30일 전남 장성 소재 은혜파크호텔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일 대구 팔공힐사이드호텔, 5월 7일 경기도 용인 한화리조트 등 전국 3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등록제 시행과 정부 방역시책 방향(이수두 농림부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 난계대질병 근절 및 최근의 양계질병 예방대책(김재홍 수과원 조류질병 과장) △ND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접종방법 및 실습(Dr. Goosen, vanden Bosch 인터베트코리아)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행사에 관한 문의는 (사)대한양계협회 홍보팀(02-588-7651)으로 하면 된다.

**제6차 닭고기수출위원회 개최**  
**2003년도 닭고기 수출계획 수립**

닭고기수출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팔레스 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 사업결과보고와 함께 200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닭고기수출위원회에서는 올해 닭고기 수

출목표를 육계육 2,120톤(6백36만불), 노계육 1,400톤(1백40만불), 부산물 470톤(47만불), 삼계탕 456톤(1백77만불) 등 총 4,446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닭고기 수출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삼계탕, 노계육 수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일본에 닭고기 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모션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 11월 관측행사 추진시 한국산 가금육 우수성 홍보에 비중을 두어 시행키로 했다.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최진호)는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16일 축산회관 지하 강당에서 「중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란 주제로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한국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농림기술연구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경영분야를 비롯 육용종계(육성기·산란기·부화·영양)·산란종계·질병 및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발표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등록비는 5,000원(석식비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042-822-1105)로 연락하면 된다. ☎